

수 신 시·도건축사회회장
(경유)

제 목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운영 관련 안내 알림 [알림 2021-014]

1. 협회와 회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건축사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089 (2021.07.27.)호’ 관련 입니다.
3. 「건축법」 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 및 관계자변경에 따른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다수의 민·관원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법」 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귀 회의 회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건축사(이하 “제외 대상자”)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이 아닌 건축사(이하 “공동 설계자”)가 공동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여부

- 1) 제외 대상자 단독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 2) 제외 대상자와 공동 설계자가 공동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 대상

나. 설계자 변경에 따른 제외 대상 적용 여부

- 제외 대상자의 설계 참여도 및 설계자 변경시점을 고려하여 판단

붙임 : 국토교통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기준 안내 1부. 끝.

대한건축사협회 회



담당자	이동현	팀장	임태영	국장	강주석	사무처장	이남식	상근 부회장	한창섭	회장	석정훈
-----	-----	----	-----	----	-----	------	-----	-----------	-----	----	-----

협조자 (공람)

시행 법제 230 - 1288 (2021. 8. 4) 접수

우 0664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8층 / <http://www.kira.or.kr>

전화번호 02-3415-6838 / 팩스번호 02-3415-6868 / kira4@kira.or.kr / 비공개
문서24 “대한건축사협회(건축법제국)”